

### 고용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고용노동부가 일하고 싶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정책실을 중심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사고예방 등과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한 통합브랜드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사업장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 만들기로 구성된다. 먼저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4.45%의 사고재해(천인)율을 올해에는 3.92%로, 산재근로손실일수는 325만일에서 올해 286만일로, 사고사망자수는 1,392명에서 올해 1,225명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신바람일터'는 근로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생일터'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4대 일터별 추진과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기준에도 좋은 일터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용부 박재완 장관은 "향후에는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안심일터 만들기,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브랜드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본부장 박재완)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향후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서 비중 있게 추진될 브랜드사업들이 각 기관·지역별로 발표됐다.

정부부처의 경우 과기부는 학교안전교육, 행안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특별관리, 지경부는 산업단지 안전문화 조성,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업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예방, 국토부는 안전관리 감리원 교육 강화 등을 각각의 브랜드 사업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본부의 경우 기본수칙 지키기, 인천지역본부는 안전보호구착용 생활화, 강원지역본부는 업업재해 반으로 줄이기 등을 브랜드화 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 및 경남, 전남지역본부의 경우 조선업, 대구·경북 및 전북지역본부는 자동차업, 대전지역본부는 건설업에 대한 특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 충남, 전남지역본부의 경우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 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안심일터 4U'라는 주제로 4대 홍보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3월에는 오토바이 사고, 4월에는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 5월에는 건설업 추락 재해, 6월에는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기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업주 귀책사유 없는 재해, 재해를 산정시 제외

앞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반영돼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를 산정절차가 개선됐다.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눈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등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산정에서 제외시킨 것.

아울러 개정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실시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를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지정하던 것이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로 기준이 변경됐다.

문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체계 구축

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 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화학물질의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평가결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과태료 감경 입법예고, 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최근 의무 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감경사유로 기존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차등부과를 한다는 내용과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 담겨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2년 이하 신규 사업장 안전 '빨간불'

사업을 시작하지 2년 이하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사업장 설립 2년 이하의 사업장'과 '2년 초과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설립 2년을 넘은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2년 이하의 사업장은 최근 들어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립 2년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1년 0.78%였던 재해율이 계속해서 급증해 2009년에는 1.28%로 무려 0.50%p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연구원은 설립초기 사업장은 여러가지 여건상 재해예방 역력이 미약한 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업장은 재해예방 노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년 이하의 사업장'의 재해형태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재해형태는 감김·끼임재해(2,671건, 20.67%)로 나타났다. 그뒤는 넘어짐 재해(2,576건, 19.91%), 추락재해(1,238건, 9.95%), 도로상교통사고(1,173건, 9.4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6,894명(재해율 2.32%)의 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재해가 심각한 업종으로 기록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2년이 넘어야 재해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설립 2년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지방청, 배달업계와 안전문화 확산 위한 MOU체결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성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손두익)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미스터피자(대표 이주복), 한국도미도피자(대표 오광현), 한국피자헛(대표 이승일) 등 피자 3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대표 김용만)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피자 3사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륜차 넘어짐 및 충돌 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업체별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배달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안전활동을 전국 가맹점과 회원사에도 적극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분식점, 족발전문점 등 다양한 음식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회원사들의 안전배달 경영방향이 정착되도록 적극 동참키로 했으며, 업체 특성에 맞게 안전배달 배지 착용, 포장지에 안전배달 인쇄 등 다양한 안전배달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